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9월 6일

나. 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9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9. 1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○ ESG 경영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○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을 명시하고, 안 제5조(기본계획)에서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(지원사업)에서는 ESG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8조(이에스지 경영활성화)에서는 안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기업 등이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등 이행사항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기업경영이나 투자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비(非)재무적인 요소들을 반영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서, 2022년부터 EU와 미국을 비롯하여 기업의 ESG 경영실적 공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었으며, 우리나라도 ESG 공시 의무화가 예고되어 있음.
- 한편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58%가 ESG경영 준비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26%의 기업만이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76%는 ESG 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. 정부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.
- 본 안건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 ESG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

으며 지원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5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9. .

발 의 자 : 최봉희, 우경란, 남완현
· 신흥식, 이성수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다. 지원사업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라.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9. 8. ~ 9. 12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(ESG)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에스지(ESG) 경영”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(Environmen t), 사회(Social), 거버넌스(Governance)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“산하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 - 나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에스지(ESG)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
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,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
2. 이에스지(ESG)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, 운영지침, 실태, 평가 및 관리방안,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(ESG)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를 준용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홍보 및 교육
2. 이에스지(ESG)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
3. 환경, 사회,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
4. 이에스지(ESG)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
5. 그 밖에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)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
2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3. 이에스지(ESG)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
4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

제9조(성과평가 및 혜택)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, 포상,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등)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내·외 기업, 기업 협의체,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창)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